

環境汚染과 持續可能 發展의 問題

韓 三 寅*

目	次
I. 序 論	Ⅲ. 持續可能 發展의 問題
Ⅱ. 심각한 環境(汚染)問題와 그 原因	1. 持續可能 發展의 意義와 內容
1. 經濟成長(開發)論	2. 持續可能 發展의 國際的 動向
2. 反成長(環境優先)論	3. 持續可能 發展의 國內的 對應
3. 私 見	Ⅳ. 結 論

I. 序 論

사람의 활동에 의해 생기는 有害物質 또는 에너지가 물·공기·토양 등을 媒介로 하여 계속적인 상태로 一般公衆의 건강이라든가 자연환경에 弊害가 되는 것을 環境汚染(Environmental Pollution)이라 한다. 따져 보면, 연료를 태워서 열을 이용하는 행위·물건을 생산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행위 등 사람의 일상생활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적 차원 이외에 정치·경제·제도·과학기술·사회·윤리·종교적 차원들과 연관이 있어서¹⁾, 환경문제의 다양한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²⁾.

한편 현대사회는 환경이데올로기가 부각되는 사회이다. 환경의 질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고 資源의 낭비를 막기 위해 再活用을 장려하는 등 어떤 個別事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산성비·사막화·오존층 파괴·지구온난화·생물다양성 소멸·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그 결과 生態系의 파괴, 나아가 인류의 생존 및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첫째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를 再檢討해 보며, 둘째 1992년

* 濟州大學校 法學科 教授 (民法·環境法)

1) S. Kamieniecki, R. O'Brien, and M. Clarke, "Political Philosophy, Pragmatic Politics, and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n Sheldon Kamieniecki, Robert O'Brien, and Michael Clarke(eds.), *Controversies in Environmental Polic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pp.300-307.

2)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9.

「리우환경회의」에서 밝혀진 '발전 내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뜻하는 持續可能的 發展(이른바 ESSD의 원칙)의 意義와 指向點을 파악해 보고, 그 對應方案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심각한 環境(汚染)問題와 그 原因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transboundary) 다른 인접국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地球村 共同의 問題(Global Issue)라 할 수 있다.

한편 環境受容能力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環境系에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환경오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주요 환경오염 사건의 몇 가지를 보면, 유즈계곡사건·런던스모그·이따이 이따이病·미나마따病·보팔市 사건·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유엔은 이미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 UNCHE)」을 통해 '모든 국가는 自國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고, 지구의 자연자원은 면밀한 계획이나 관리를 통하여 현재대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문제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人類의 存亡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천적인 복합성과 다원성으로 인해 지극히 난해한 時代的 課題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미국·일본·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물가상승, 실업문제와 함께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대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유엔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환경상태에 대한 일반대중의 심각한 반응이 잘 나타났으며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의식조사결과⁶⁾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사실⁷⁾을 보여주고 있다.

3) Louis B. Sohn, "The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Th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4, NO. 3, Summer 1973, p. 515.

4) 지구전체로 파악되는 주요 환경문제를 概觀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구온난화 내지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100년간 대기중의 CO₂ 농도는 25% 증가하였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0.3~0.6°C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1C말에는 기온이 2~5°C 높아지고 해수면은 30~100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오존층 파괴(threat to the ozone layer)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와 피부암 등의 문제이다. 셋째, 생물다양성의 감소문제이다. 지구의 생물종이 향후 30년간 매일 100여종씩 멸종되어 전체생물종의 25%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허남훈, 「국가발전과 환경」,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5, pp. 141-142.

5) 허남오,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1996, p. 23.

6) 환경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995, p. 80.

7)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의 집중현상은 도서지방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제주의 자연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처리 등의 각가지 환경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주민과 관광객의 비율은 1992년 현재 1:7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인 하와이의 경우(1:6)를 초과하는 것이라 한다.

濟州道, 「環境白書」, 1996, p. 138.

<표 1> 세계적인 주요 환경오염 사건

환경오염 사건	발생년도	원 인	피해 내용
뮤즈계곡 사건 (Meuse Valley Smog) : 벨기에	1930	뮤즈계곡 철강공장발전시설 굴뚝에서 나온 SO ₂ , CO, 부유분진 등에 의한 대기오염	평소 사망수의 10배인 60여 명이 3일동안 사망, 전주민이 만성호흡기질환 등 발생
런던 스모그 (London Smog) : 영국	1952	런던市에서 석탄연소시 발생한 SOx, Aerosol 및 분진 등에 의한 대기오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4일동안 400명 사망
이따이 이따이病 (Itai Itai) : 일본	1968	일본 후지야마縣 광산 및 제철공장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수질오염을 일으켜 음료수, 어패류 및 쌀 등에 축적, 식물연쇄를 통해 중독	골연화증 등의 피해자 258명 발생, 128명 사망
미나마따病 (Minamata) : 일본	1953	빙초산 제조공장에서 촉매로 사용한 유기수은의 누출에 의한 식물연쇄 현상으로 어패류에 수은 축적	중추신경 질환 등으로 2차에 걸쳐 피해
보팔市사건 : 인도	1984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의 농약공장에서 누출사고	1408명 사망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 : 소련	1986	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31명 사망, 500명 부상, 소련외무성은 향후 50년내 2000명이 암으로 사망 예상

출처 : 허남훈, 「국가발전과 환경」, 도서출판 동화기술, 1995, pp.68-69.

한편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원인의 복합성과 파급영향의 다양성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확보와 지식체계의 종합적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원인과 그것의 결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開途國의 경우 환경문제는 대체로 발전의 결여, 즉 극심한 빈곤의 조건을 극복하려는 투쟁에서 유래한 것인데 반하여, 先進國에서는 경제성장이 환경악화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며, 환경의 영향에 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환경악화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기반이 파괴됨으로써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⁸⁾.

8) Peter Bartelmus,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Boston : Allen & Unwin, 1986, p.18.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과 관련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주장과 논란이 있어 왔다.

1. 經濟成長(開發)論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환경은 크게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경제성장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조달할 수 없다는 논리⁹⁾이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도,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른바 低開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¹⁰⁾도 있다. 또한 世界史的 經驗과 오늘날의 후진국의 상황에 비취볼 때 빈곤과 저개발도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¹¹⁾이다. 이렇게 볼 때 안정된 사회분위기에서 貧富의 隔差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제성장, 즉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開發論者들은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社會間接資本(SOC)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이 보다 가속화돼야 한다는 것이다¹²⁾.

2. 反成長(環境優先)論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억제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진국의 많은 自然資源이 선진국의 발전을 위해 추출됨으로써 후진국은 전례없는 환경파괴를 초래했던 사실¹³⁾에 비취볼 때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대 산업사회가 경험한 조속한 경제성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72년 로마클럽의 첫 보고서인 「成長의 限界(The Limits to Growth)」에서도, '현재의 인구성장·산업발전·자원사용이 지속된다면 다음 세기 중반까지 지구는 生態學的

9) 대한 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1992, p. 34.

10) P. Barthelemy, *Environment, Growth,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1994, p. 6.

11)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사막화와 토질열화는 빈곤에 따른 지나친 방목, 경작 및 벌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도,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절대빈곤이 퇴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1993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는 "환경과 빈곤, 그 악순환의 단절"이었다.

12) 김동영, "보존인가 개발인가", 「자연보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6, 3·4, p. 22.

13) Allan Schnaiberg and Kenneth Alan Gould, *Environment and Society: The Enduring Conflict*, New York: St. Martin's, 1994, pp. 168-169.

14) 이정진,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博英社, 1995, p. 102.

把減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¹⁴⁾ 있다. 결국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맹목적인 경제성장추구는 자연고갈과 환경오염·생태계파괴를 가져와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反成長論者들은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환경은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¹⁵⁾.

3. 私 見

환경문제에 대한 認識 내지 對應은 어떤 視角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문제를 단순한 産業活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환경정책은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나 그 抑制에 집중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도저히 兩立할 수 없는 排他的·價値對立的 關係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見地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의 확장을 근본원리로 하는 디딜방아(treadmill of production)¹⁶⁾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및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나¹⁷⁾, 또는 '지나친 빈곤이나 저개발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경제성장론자들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요청의 兩立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 사이의 관계를 零合關係(Zero-Sum)가 아닌 상호보완가능성의 관계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基調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經濟成長論이나 環境優先論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우기 1995년에 貿易과 環境을 연계시킨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가 출범¹⁸⁾했고, 環境의 世紀를 눈 앞에 둔 오늘날에 있어서는 成長(開發)과 環境保全의 調和를 꾀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게 될 '持續可能한 發展(ESSD)'의 意味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5) 김동영(1996), pp. 23-24.

16) 생산의 디딜방아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인 경쟁과 이윤추구의 과정에서는 생산이 더욱 獨占化되고 더욱 擴大되어짐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生態系의 解體가 가속화되는 기본적인 메카니즘을 뜻" 하는 환경우선론자의 견해이다.

Allan Schaniberg, *The Environment : From Surplus to Scarcity*,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0, pp. 231-237.

17) Allan Schnaiberg(1994), p. 168.

18) 이제 세계환경질서와 조화되는 국내환경정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國內産業活動은 위축되고 國際通商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Ⅲ. 持續可能 發展의 問題

현대의 환경정책의 根本哲學은 종전의 '경제성장(발전 또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¹⁹⁾라는 다소 選擇的 立場에서 '持續可能 發展(開發)'이라는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樣態로 전환되고 있다.

1. 持續可能 發展의 意義와 內容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는, 소위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으로 불리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원칙을 줄여서 '지속가능 발전'²⁰⁾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어의 머리글자만 따서 'ESSD'라고 칭하기도 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내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나, 그 근본취지는 '적절한 환경보전 없이는 발전(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環境容量을 감안한 경제개발을 하여 未來世代에 대한 環境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면서 現世代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經濟成長(發展 내지 開發)의 정도는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가시적인 목표이나, 環境保全은 구체적인 單一指標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잴 수 있는 可測的인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또한 어떻게 해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이냐가 분명하지 않다.

20) 持續可能 發展의 유래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생태학적 요인이 발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 UNEP)」이 1970년대에 주창한 '生態的 開發(eco-development)'에서 유래한다.

(Peter Bartelmu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oston : Allen & Unwin, 1986, p.18).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1980년 자연과 천연자원을 위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살아있는 자원의 보존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가진 세계적 보전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제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Sharachchandra M. Lélé, "Sustainable Development :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vol. 19, 1991, p.610.).

그후 UN에서 세계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개념은 더욱 정교해지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리하여 1983년 UN총회에 의해 설립된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는 1987년에 발간된 보고서(*Our Common Future*가 題名인 이 보고서는 일명 Brundtland보고서라고도 한다)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밝혔는데, 이것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공식주제로서 지구상에 천명된 것이다.

<표 2> ESSD에 관한 학자들의 定義

정 의 출 전	자연조건을 중시한 정의			세대간 공평성으로부터의 정의			보다 고차적 관점에서의 정의	
	생물의 다양성	환경용량 내에서의 생활	천연자원 의 보전	환경과 경제의 예견적인 배려	영속적인 경제성장	세대간의 공평성	세대간의 공평성, 생활수준 의 향상	사회·인권 문화 등의 가치, 활동
1. Coomer		○			○			
2. Allen						○	○	
3. IUCN (WCS)	○		○	○				
4. Tietenberg	○	○					○	
5. Brundtland			○	○	○		○	○
6. Clerk & Munn				○			○	
7. Repetto			○			○		
8. Baroier			○		○	○	○	○
9. Brown, et al				○	○		○	○
10. Tolba		○		○	○		○	○
11. Pearce, et al		○	○		○		○	
12. Turner			○		○		○	
13. WCED	○	○	○			○	○	○
14. Barbier			○	○	○			
15. OECD			○	○		○		
16. McCormick		○	○		○		○	○
17. Braat		○			○			
18. Norgaa						○	○	○

출처 : 노용희, "세계질서와 環境問題", 「프레스센터 環境問題세미나」, 1993년 10월 26일.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Our Common Future*)에 따르면 持續可能 發展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개발)'이라는 것이다²¹⁾. 이 개념에 포함된 두 가지의 숨음을 보면,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21) "Sustani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 Press, 1987, p.43.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은 당연한 것이지만, 둘째 그 발전(개발)은 生態系의 수용능력(環境容量)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속가능 발전은 생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행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그 관리는 社會的 衡平을 增進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²²⁾.

지속가능 발전의 指向點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첫째, 모든 발전(개발)은 범지구적 환경용량(국가·지역적인 환경용량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量보다는 質을 향상시키는 발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과 경제(발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資源과 環境管理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만으로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미래세대의 자연환경 이용을 크게 늘려주기 위해 현세대의 자연환경 이용을 크게 줄이는 양보가 없는 지속가능 발전이 不可能할 수도 있게 된다²³⁾.

한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政策目標를 보면, '① 성장을 재생시키고, ② 성장의 질을 변동시키며, ③ 직업·식량·에너지·물 및 위생에 대한 필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④ 지속가능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 ⑤ 자원의 기반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며, ⑥ 기술을 재지향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⑦ 결정작성에 있어서 환경과 경제를 수렴시키며, ⑧ 국제경제관계를 再指向하고, ⑨ 발전을 보다 참여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적 게임규칙을 再定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낭비적 소비와 오염위주의 경제개발에서 보전위주의 경제개발로, 특권과 보호주의가 횡횡하던 경제규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公平하고 均等한 기회가 열려있는 經濟規則으로 變換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여 환경오염(파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試圖라 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은 그 목표에 나와 있듯이, 인구·생물다양성·인간의 주거문제 등이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²⁶⁾, 이같은 상호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²⁷⁾.

22) WCED(1987), p.9.

23) 이에 대한 數學的 證明은 아래의 문헌을 참조할 것.

R. Howarth and R. B. Norgaard, "Environmental Valuation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AEA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92, pp.453-457.

24) Sharachandra M.Lélé, "Sustainabl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vol.19, no.6, 1991, p.611.

25) M. E. Kann, "Environmental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in Sheldon Kamieniecki, Robert O'Brien, and Michael Clarke(eds.), *Controversies in Environmental Policy*,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6, pp.252-274.

26) WCED(1987), p.9.

27) WCED(1987), p.9, p.62.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은, 종전의 소극적·방어적 환경보전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진취적 경제활성화정책 내지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²⁸⁾. 따라서 현재 各部處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보전기능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環境部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²⁹⁾.

2. 持續可能 發展의 國際的 動向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지구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부(the corpus of international law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를 포괄하는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에 대해 최근 들어 국제법학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³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유엔은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개최함으로써 환경문제는 국제적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2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하였고, 1970년대에는 해양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많이 체결되었다³¹⁾.

1980년대에 들어서는 '오존층의 소실·지구온난화·생물다양성의 소멸' 등의 전지구적인 환경위기가 논의되었고 특히 후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사막화와 담수의 부족과 같은, 개발과 관련된 환경위기가 심각히 대두되었다. 특히 1982년에 유엔총회는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었으며 또한 開途國에서의 환경과 자원의 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유엔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브룬트란트 보고서(*Our Common Future*)가 1987년에 제출되었고 유엔총회는 이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28) 그 추진과 관련해서 볼 때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의 개선으로서가 아니라 윤리의 회복·물질의 재생·사회에 대한 책임의 확장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사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조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生態論的 責任으로 統合시킬 수 있는 생활방식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Ralph Saemann, "The Environment and the Need for New Technology, Empowerment and Ethical Values",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Fall & Winter 1992, pp.186-193.

29) 이정전(1995), p. 164.

30) A. Kiss and D.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Transnational Publication, 1991, p. 21.

31) 1970년대에 이루어진 환경보호를 위한 國際協約은 그 대부분이 海洋汚染의 規制를 위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1977년 EC의 위원회가 선포한 EC의 共同環境政策(Common Environmental Policy)과 1979년의 廣域越境大氣汚染協約(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을 들 수 있다.

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어쨌든 이 보고서의 주된 과제가 이미 앞에서 검토했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인 것이다.

持續可能 發展(開發)의 원칙을 탄생시킨 브룬트란트 위원회는 그 산하에 環境法專門家 그룹(Experts Group on Environmental Law)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그룹은 *Our Common Future*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법적 원칙과 권고(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Recommendation)'라는 자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³²⁾. 그런데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2000년 전까지 채택되어야 할 국가 및 국가간의 법원칙을 도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전문가 그룹은 몇가지 원칙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부(1-8조)는 資源과 環境의 沮害에 관한 일반원칙, 제2부(9-20조)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원과 환경적 저해에 관한 일반원칙, 제3부(21조)는 국가책임, 그리고 제4부(22조)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세계 국가원수들에 의한 지구헌장(Earth Charter)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視角차이가 컸으나, 개도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으로 그 이름이 바뀌지게 되었다³³⁾. 어쨌든 리우선언에 나타난 持續可能 發展에 관한 原則들을 보면, 일반원칙(제1조의 인간중심주의, 제3조의 세대간 형평, 제4조의 개발과 환경의 통합), 제9조의 과학기술의 역할, 제10조의 공공참여, 제11조의 환경기준과 환경법, 제16조의 오염자부담의 원칙, 제17조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 수 있다³⁴⁾.

그리고 1992년 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는, 당시 주요국가 표준화기관의 요청에 따라 1993년 6월에 기술위원회 207(Technology Committee 207: TC 207)로 확대 발족시키고,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관련 규격들을 통일하여 商品과 用役의 거래시에 국제적 표준 認證(다른 국제환경 규제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환경분야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4000시리즈를 1996년부터 발급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³⁵⁾.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주요 국제환경협약을 그 명칭만을 보기로 한다. ① 오존층과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가입날짜: 1992. 2. 7), ② 몬트리얼의정서의 런던개정의정서(The

32)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egal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 Adopted by Experts Group on Environmental Law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raham & Trotman, 1987.

33) Kovar, "A Short Guide to the Rio Declaration", *Colo. J. Int'l Environmental Law & Policy*, vol. 4, 1993, p. 123.

34) 이정전(1995), pp. 173-184.

35) 허남훈(1995), p. 79.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가입날짜: 1992. 12. 10), ③ 몬트리얼의정서의 코펜하겐개정정서(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가입날짜: 1994. 12. 2), ④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가입날짜: 1993. 12. 14), ⑤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가입날짜: 1994. 10. 3), ⑥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가입날짜: 1994. 2. 28) 등을 들 수 있다.

3. 持續可能 發展의 國內的 對應

1) 環境法制上的 對應

환경법(Environmental Law)은 국가의 환경정책을 總體化시킨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국회·행정당국과 기업가·시민들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환경법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議題 21(Agenda 21)」의 중요한 테마인 能力涵養(capacity building)과 公共參與(public participation)에 있어서 환경법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법을 발전시키고, 환경법³⁶⁾에 밝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³⁷⁾.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ESSD의 이념을 반영한 규정내용,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 오염자부담의 원칙, 배출부과금제도 등을 概觀하여 再吟味해 보기로 한다.

環境政策基本法 第2條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환경보전의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정신은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³⁸⁾.

36) 우리나라는 1990년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이외에, 폐기물관리법(1991. 3. 8), 자연환경보전법(1991. 12. 31), 환경개선비용부담법(1991. 12.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 12. 8), 환경영향평가법(1993. 6. 11), 한국자원재생공사법(1993. 12. 27), 환경개선특별회계법(1994. 1. 5), 먹는물 관리법(1995. 1. 5) 등을 제정하였다.

37) 同旨: 이정전(1995), pp. 189-190.

38) 李相敦,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大學出版社, 1995, pp. 238-239.

(1) 環境基準

환경기준(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이란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환경상의 조건을 뜻한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다시 말하면, 自然淨化力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자연정화력의 감소를 막기 위한 목표를 數植化한 것으로서 요구되어야 할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 기준³⁹⁾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기준은 環境影響評價 및 環境汚質物質排出規制를 유도하는 데 그칠 뿐, 그 자체로서는 어떤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환경기준은 하나의 行政基準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①항).

구체적 환경기준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⁴⁰⁾의 성질에 따라 大氣·水質(河川, 湖沼, 地下水, 海域別)·騒音의 환경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들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배출허용기준(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이다.

환경기준은 그 용도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쾌적한 환경이 국가의 福祉水準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환경기준은 강화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環境影響評價制度

환경영향평가(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공사의 시행에 앞서서 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뜻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1호 참조). 즉 개발이 행해지기 전에 그 경제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로서, 이 제도는 개발로 빚어지게 될 영향에 관한 정보를 해석·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제한된 활동에 관한 환경적 측면의 결과를 대체적 개발과 병행해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관리에 기여하게 된다⁴¹⁾. 결국 이 제도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후 1990년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주민참여(public participation)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를 대폭 보완하였고, 1993년에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예방적 환경보전정책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39) 北村喜善, "環境基準", 「行政法, 爭點(新版)」, シュリスト増刊, 1992.

40) 성과기준이란, 被規制者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만 설정하고, 그 달성방법은 배출기준(parts per million: ppm)이나 수질오염에 관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등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환경기준을 말한다.

金東熙, 「行政法(Ⅱ)」, 博英社, 1994, p.405.

41) 전재경, 「환경영향평가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p.16.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현재 16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이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민간사업자의 사업까지도 그 평가대상이 되어 범위가 확대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평가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자 등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10조 참조).

(3) 汚染者負擔의 原則

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 : 3P)이란 오염자가 환경을 만족스런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는데 따르는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⁴²⁾. 다시 말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이 유발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사회에 부담지을 것이 아니라, 汚染을 야기시킨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이미 1972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회의에서도 제창된 바 있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배출부과금 제도와 資源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에 의한 廢棄物處理負擔金 制度, 그리고 環境改善費用負擔法에 의한 汚染負擔金 制度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원칙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는 이들의 생산이나 소비에서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市場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4) 排出賦課金制度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 or effluent charges)이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원의 배출량이나 그 잔류량에 대하여 과하여 지는 부과금을 뜻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제도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여 지는 金錢의 制裁로서 課徵金の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經濟的 誘因制度⁴³⁾로서의 규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4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 Definition, Analysis, Implementation*, Paris : OECD, 1975, p. 15.

43) 경제적 유인제도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해서 環境稅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한 기업은 세금이 무서워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원인이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환경보전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앞에서 본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行政罰과 비슷한 것이나, 징수된 과징금은 당해 행정분야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특징이 있다⁴⁴⁾.

2) 企業의 對應

한 국가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國民總生産(GNP)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國民福祉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總量上으로는 GNP가 성장하고 있어도, 얼마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이 점은 경제성장(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국민총생산의 범위에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환경오염·자원파괴로 인한 손실까지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같이 巨視經濟指標인 GNP 대신에 환경오염을 고려한 국민총생산의 개념을 綠色總生産(Green GNP)⁴⁵⁾이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을 기하기 위한 企業의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녹색생산(green production)·녹색마케팅(green marketing)·녹색이미지(green image) 등의 綠色戰略(green strategy)體系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環境親和의 경영체계·방식을 도입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파악되어진, 지속가능 발전에 대응키 위해 나타난 운동인 환경친화적 經營方針(The Greening of Management)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경영이란 경영자가 기업경영에 관련된 意思決定을 할 때 기업의 生態的 役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을 고려하는 視角의 경영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녹색경영에서 강조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기업의 생산·마케팅·인사 등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의 녹색경영체계(Green Management System) 구축은 현대기업의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세레스 원칙(The CERES Principles)⁴⁶⁾이라고 하는 기업의 환경대응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환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 정보공개 등이 체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약하나마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계를 체크하는 環境監査

44) 허남오(1996), p. 207.

45) 일본은 1990년에 세계 최초로 Green GNP를 계산·공표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잠정적으로 계산한 바가 있다 한다.

허남오(1996), p. 158.

46) 1989년 알라스카 앞바다에서 Exxon社의 유조선 발디스號에 의해 발생한 원유 유출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모든 기업활동에 대해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를 결정요소로 하도록 정한 10개 원칙을 발디스 원칙(The Valdez Principles)이라 한다. 그 후 경제인연합체(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ve Economics: CERES)가 발디스 원칙을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개정한 것이 바로 세레스 원칙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② 삼림 등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보전하고, ③ 에너지 절약의 촉진, ④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도입, ⑤ 안전한 상품판매, ⑥ 환경에 해를 줄 경우 그 피해보상, ⑦ 환경에 주는 위협성에 대한 정보 공개, ⑧ 환경문제 상담원 상주, ⑨ 이상의 문제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制度(Umwelt - Audit)⁴⁷⁾가 도입되어 있다⁴⁸⁾.

3) 地方自治團體의 對應

환경보전은 복합적인 과제이므로 개개의 명령, 금지, 인·허가 등의 개별적인 결정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결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단지 지연되거나 환경보전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⁴⁹⁾ 환경보전은 물론 미래세대가 사용하게 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환경부가 수립한 '21세기 환경비전'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 ② 청정한 공기의 확보, ③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순환형 사회구조 형성, ④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공동체 조성, ⑤ 환경관리체계의 선진화, ⑥ 지구환경보전에 주도적인 역할 등이다. 그런데 地方自治時代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의 21세기 환경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추진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⁵⁰⁾.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환경행정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地域環境基準(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③항)은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⁵¹⁾.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⁵²⁾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47) 기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및 시행정도를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는 朴秀赫, "環境監査에 관한 法制度的 考察", 「環境法研究」第16卷, 韓國環境法學會, 1994, pp. 41-60을 참조할 것.

48) 허남훈(1995), pp. 148-149.

49) M. Kloepfer, Umweltrecht, in: Achterberg/Pütl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II, 1992, S. 596.

50)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議題 21(Agenda 21)」의 제28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도 로칼아젠다 21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51)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52)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는 1995년 6월 30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그 평가대상사업은 18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확장·강화되었고, 1995년 11월 1일 개정된 특별법 시행조례는 제24조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의 평가서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자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인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경우 등은 평가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濟州道, 「環境白書」, 1996, pp. 230-232.

한편, 제주도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濟州道開發特別法 제14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법·시행령·조례로 규정하여, 제주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는 自治環境影響評價制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제주도는 1993년 7월 5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한 景觀影響評價制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경관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으로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사업시행의 결과로 그 경관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뜻한다.

①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연면적 6천 600㎡이상이거나 높이가 15m이상인 것, ②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연면적 3천 300㎡이상이거나 높이가 12m이상인 것, ③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특별관리지구안의 건축물·공작물 연면적 660㎡이상인 것은 그 평가대상이 된다.

濟州道(1996), pp. 243-244.

한편 어떤 자치단체내의 환경오염현상은 당해 자치단체의 財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汚染者負擔原則에 의한 財源分配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水質保全을 위한 비용은 그 지역에 오염을 流入시키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⁵³⁾.

IV. 結 論

本稿는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리우 환경회의」에서 공식 표명된 '環境적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發展(ESSD)'의 意味와 指向點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摸索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考究되어진 내용 중 몇 가지 주요사항을 再強調함으로써 마무리에 갈음하고자 한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에서 그 심각성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가 곤란한 地球村 共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에 있어서는, 經濟成長論이나 環境優先論 그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은 아닌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기본바탕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持續可能 發展(ESSD)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세계각국은 기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개발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든 간에, 1992년 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야말로 國際環境秩序의 最高價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意味는 무엇인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거듭하여, 이 理念의 具現을 위해 개별국가는 물론 세계각국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環境基準의 設定·環境影響評價制와 같은 法制를 통해, 기업의 綠色經營體系(Green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ESSD의 세계적 압력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原因提供도, 나아가 그 해결의 주체이자 실마리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구현을 위한 環境教育이 활발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53) 정희성, 「地方自治時代의 環境政策」,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4, p. 160.